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녹색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체계 마련 〉

■ 이견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61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녹색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체계 마련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3일 이견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III. 검토의견

1. 녹색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체계 마련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지원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업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녹색사업전환 대상 중소기업자의 발굴,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녹색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하 이 조에서 “녹색사업전환”이라 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	

현행	개정안
중,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사업전환 대상 중소기업자의 발굴 2. 정보 제공 3.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4. 컨설팅 결과와 용자·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5. 녹색사업전환에 따른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 지원 6. 그 밖에 녹색사업전환 추진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49조¹⁾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분야로 사업 전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50조²⁾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 자금융자 등을 지원의 종류와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양 부처간 협력방안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

-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사업전환 지원)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은 녹색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 사업전환계획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 및 지원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구체화하고 업종지정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하는 한편, 협력체계 규정을 두면서, 세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지정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 부처 소관 사업간 중복 소지를 없애고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³⁾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⁴⁾이므로 사업전환 촉진 지원 주체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지원의 종류와 범위 등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낮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3) 동 법률안은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 구축,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정보제공, 컨설팅지원, 인수·합병 지원, 자금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유희설비의 유통지원, 입지지원, 세제지원, 판로확보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4) 2025년 탄소중립분야 사업전환자금 550억원(72개사)지원, 구조혁신 진단 283개사, 컨설팅 135개사 실시

문 의 처
02)6788-5536